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유재필 ③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16 트리마제@101-3502	②주민등록번호 420529-1030121 ④전화번호 02-3391-4240	
⑤기관명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⑥법인등록번호	111332-0003792	⑦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성민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17-82-05123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학교법인/기타: ☐ 개인 ☐ 기타()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재가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기관소재지	주소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순복음비전센터 4F 전화번호02-934-4241 팩스번호02-937-4241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2025년 07 월 10 일

신청인(대표자)

유재필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유재필

(서명 또는 인)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3-11350-00044				총 원		50명					
③ 설치신고 날짜	2008년 7월 10일											
⑤ 직원현황	총 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 타
			소개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직업) 치료사	영양사	
	44명	1		2					41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5,947,41㎡		건물 면적	94.25㎡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o)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 주소	WFSM or.kr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
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
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v] 방문요양 [v]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옹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 종료일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①	1	이미연	640925 -2056918	2	제 2- 184958호	2008 .09.23	전임	2009.02.11		x
②	3	김희례	760123 -2068629	2	제 2- 288006호	2010 03.19	전임	2023.01.16		o
③	3	박선희	710110 -2650616	2	제 2- 886963호	2019 03.05	전임	2024.10.01		o
④	11	강수인	600915 -2666133	12	제2011 -1002161호	2011. 01.10	시간제	2012.06.18		x
⑤	11	권숙자	591016 -2168010	12	제2016 -1008552호	2016 09.19	시간제	2021.10.26		x
⑥	11	김덕이	640301 -2031150	12	제2020 -1019005호	2020 12.24	시간제	2024.04.22		
⑦	11	김명숙	620930 -2626622	12	제2008 -1006995호	2008 06.17	시간제	2023.08.04		x
⑧	11	김선례	560718 -2538212	12	제2009 -1023195호	2009 05.21	시간제	2018.02.02		x
⑨	11	김영미	660309 -2663218	12	제2008 -1025456호	2008 09.08	시간제	2022.09.13		x
⑩	11	김춘희	550119 -2042019	12	제2013 -1000271호	2013 05.07	시간제	2018.04.16		x
⑪	11	노은자	601016 -2148315	12	제2008 -1018669호	2008 08.11	시간제	2008.11.16		x
⑫	11	송명순	590601 -2655311	12	제2018 -1012154호	2018 08.14	시간제	2022.06.02		x
⑬	11	윤순덕	740105 -2332711	12	제2020 -1009897호	2020 11.13	시간제	2025.02.07		o
⑭	11	이유임	581010 -2659019	12	제2021 -1045963호	2021 12.22	시간제	2023.07.07		o
⑮	11	전경자	630115 -2386928-	12	제2011 -1011856호	2011 09.06	시간제	2016.11.29		o

2025년도 사업 계획서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목

차

I. 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2. 기관 규모 및 장비 등 현황
3. 기관 약도

II. 사업개요

III. 사업내용

1. 운영이념
2. 추진방침
3.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4. 인사관리제도
5. 사업의 필요성
6. 사업대상자
7. 서비스 지원 절차
8. 직원교육계획
9. 재무회계 및 관계서류
10. 예산서

IV.세부사업계획

1.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2. 주요 목적사업
3.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4.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서비스 제공 계획
5. 보험 계획
6. 서비스 전문화 및 관리
7. 직원 복리후생 계획
8. 고충처리 계획(임소자/종사자)
9. 급여제공사업
10. 기타
 - (1) 민원발생시 대처방안
 - (2) 소방안전계획
 - (3)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활용 계획

운영규정(안)

개정 2013년 03월 01일

개정 2014년 01월 01일

개정 2014년 07월 01일

개정 2015년 01월 07일

개정 2016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07월 01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

개정 2019년 01월 01일

개정 2020년 01월 01일

개정 2020년 04월 19일

개정 2021년 03월 28일

개정 2022년 03월 24일

개정 2023년 03월 12일

개정 2024년 03월 17일

개정 2025년 03월 16일



성민
사회복지법인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 목 차 >

□ 운 영 규 정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제3장 서비스내용

제4장 인력관리

제5장 급여

제6장 복리후생

제7장 안전과 보건

제8장 고충처리절차

제9장 회계

제10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장 보칙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지점)

고유번호 : 217-82-05123

단 체 명 :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대표자 성명 : 유재필

법인등록번호 : 111332-00*****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 (상계동, 순복음비전센터6층)

교 부 사 유 : 정정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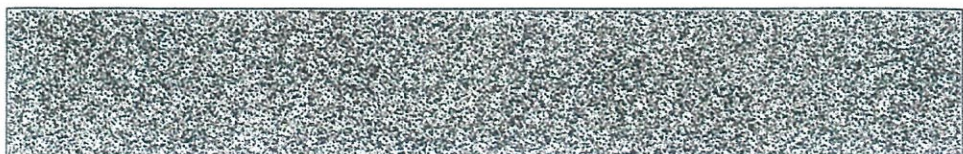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4 년 12 월 11 일

노원 세무서장



NTS 국세청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① 요양시설 · 공생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대상 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3 - 11350 - 00044)		
	급여종류 (복수기재)	방문요양, 방문노양	지정일자	2019.12.12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별표4

1 시설
(택1)

노인요양시설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치매전담실 가형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치매전담실 나형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특별침실
(가벽X, 커튼X)

입소정원의 5%이내의 범위(최소1개이상)

개

☐ 적정

☐ 부적정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미해당시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이전!)

☐ 해당

☐ 미해당

별표9

2 재가
(중복 可)

주·야간보호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건축물 용도

노유자 시설

☐

☐ 해당

☐ 미해당

(미해당시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이전!)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

관리단 집회의 결의(서)
OR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 동의서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1	별표9	② 재가 (중복 可)	단기보호		정원: 명	☐ 적정	☐ 부적정		
			건축물 용도 (미해당시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이전!)	노유자 시설	☐	☐ 해당	☐ 미해당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				
				관리단 집회의 결의(서) OR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 동의서					
			방문요양						
			사무실 크기	16.5㎡(5평)이상 (미해당시 소재지 이전!)		☒ 해당	☐ 미해당		
			건축물 용도 (미해당시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이전!)	노유자 시설	☐	☒ 해당	☐ 미해당		
				단독주택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				
	관리단 집회의 결의(서) OR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 동의서								
방문목욕									
사무실 크기	16.5㎡(5평)이상 (미해당시 소재지 이전!)		☒ 해당	☐ 미해당					
건축물 용도 (미해당시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이전!)	노유자 시설	☐	☒ 해당	☐ 미해당					
	단독주택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							
	관리단 집회의 결의(서) OR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 동의서								
물품 구비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 목욕차량		☒ 구비	☐ 미구비					
방문간호									
사무실 크기	16.5㎡(5평)이상 (미해당시 소재지 이전!)		☐ 해당	☐ 미해당					
건축물 용도 (미해당시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이전!)	노유자 시설	☐	☐ 해당	☐ 미해당					
	단독주택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							
	관리단 집회의 결의(서) OR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 동의서								
물품 구비	혈압계, 온도계 등		☐ 구비	☐ 미구비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2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①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적정	☐ 부적정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적정	☐ 부적정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적정	☐ 부적정	
	② 급여제공지침 수립 및 비치 여부(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적정	☐ 부적정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적정	☐ 부적정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적정	☐ 부적정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적정	☐ 부적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적정	☐ 부적정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적정	☐ 부적정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적정	☐ 부적정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적정	☐ 부적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건강검진 등	☒ 적정	☐ 부적정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적정	☐ 부적정
2	③ 사업(운영) 계획서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24년, '25년 계획서만 확인		
	1. 기관현황 ① 기관 개요 ② 직원현황 ③ 기관규모 및 장비현황 ④ 기관약도, 평면도	☒ 적정	☐ 부적정
	2. 운영계획 ① 사업의 필요성 ② 운영목적 및 목표 ③ 대상자 ④ 주요목적사업 ⑤ 수행인력 및 역할 ⑥ 재무, 회계관리 및 관계서류 ⑦ 장기요양요원 현황	☒ 적정	☐ 부적정
	3. 사업계획 ① 사업개요 ② 세부사업 계획 ③ 사업일정표 ④ 기대효과 ⑤ 예산서	☒ 적정	☐ 부적정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2	④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 장소만 확인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토지건물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적정	☐ 부적정
	나. 근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 적정	☐ 부적정
	다. 예산서 및 결산서	☒ 적정	☐ 부적정
	라.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적정	☐ 부적정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적정	☐ 부적정
	바.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 적정	☐ 부적정
	사. 직종별 종사자 명부, 수급자 명부(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적정	☐ 부적정
	아. 협약의료기관 지정, 제휴서류(시설)	☐ 적정	☐ 부적정
3	자.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적정	☐ 부적정
	차.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 적정	☐ 부적정
3	대표자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해당	☒ 미해당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3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
4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법 제35조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5	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건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모든 시설 대상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 - 시설, 주야간·단기: 수급자 전원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방문급여: 종사자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가입 ☐ 미가입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의2 등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 복지용구 등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u>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u>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u>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u>	☐ 적정 ☐ 부적정

구분	세부기준	점검 결과	
6	② CCTV 열람·관리 기준 준수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열람금지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적정	☐ 부적정
7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스프링클러 구비)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따르지 않아도, 타 법령상 시설 설치기준 충족 시 '적정'으로 판단	☒ 적정	☐ 부적정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년 7월 4일

신청인(대표자)

유재필



담당자 검토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재가장기요양기관(3번코드)]

대상 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3 - 11350 - 00044)		
	급여종류 (복수기재)	장기요양, 방문요양	지정일자	2019. 12. 12.
지표 번호	심사 항목			서류 비치 여부
				있음 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서류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공통	기본 비치(준비) 자료			
가. 운영규정			☒	☐
나. 급여제공지침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건강검진 등			☒	☐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다. 종사자 명부			☒	☐
라. 종사자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
마. 책임보험 가입증서(손해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	☐
바. 시설 평면도, 위치도			☒	☐
사. 5대 필수교육(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장애인학대 예방·아동학대 예방·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참여기록(결과보고서 등) 3번 기관은 긴급복지, 아동학대 예방 제외			☒	☐

지표 번호	심사 항목	서류 비치 여부	
		있음	없음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최근 2년, '24년, '25년)	☒	☐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최근 1년)	☒	☐
	다. 평가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	☐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서	☒	☐
	나. 교육 실시 자료(최근 2년('24년, '25년) 중 1회 이상 실시)		
	1) 노인인권교육 수료증	☒	☐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수료증	☒	☐
	3) (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	☐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노인인권보호지침	☒	☐
	나.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	☐
	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	☐
	다. 개인정보보호 지침	☒	☐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	☐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자료(수료증, 교육참여기록 등)	☒	☐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 및 급여제공기록지	☒	☐
	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점검 관련 기록 및 결과 반영 자료	☒	☐
	다. 감염병 관리지침 및 정기 방역 일지(방역필증 등)	☐	☐
	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파악, 사전 방지 노력과 조치	☐	☐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가. 기관 운영규정 또는 정관 마련 여부	☒	☐
	나. 운영과 관련된 회의 정기 개최 자료(회의록, 의결서, 참석자 서명 등)	☐	☐
	다. 회의 결과의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	☐	☐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가. 회계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수료 여부	☒	☐
	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	☐
	다. 희망e음을 통한 예산보고, 결산 보고 여부	☒	☐
	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	☐

지표 번호	심사 항목	서류 비치 여부	
		있음	없음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	☐
	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안전, 화재 등) 가입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	☐
	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자료	☒	☐
	라. 정기 안전점검 실시 확인 자료	☐	☐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	☐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	☐
	다.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확인 자료	☒	☐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	☐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	☐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	☐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	☐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	☐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	☐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	☐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가.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결과 또는 계획	☐	☐
	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 운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중 1개 선택하여 준비) 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근무경력 5년 이상 ③ 의사, 간호사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 보유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④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분야 전공을 한 자 ⑤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시설관리의 안전성 및 입지조건		
	① 시설의 건물층수(화재발생시 대피의 용이성) 준비 서류 없음	☒	☒
	② 소방 안전 보완 장치 마련 여부 등(완강기, 소화기 비치 등)	☒	☐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자체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7월 4일

신청인(대표자)

유재필

(서명)



담당자 검토

(서명 또는 인)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물ID	2120071120000095	고유번호	1135010500-1-03220014	명칭	순복음노원교회 비전센터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	------------------	------	-----------------------	----	-----------------	------------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지번	322-14 외 7필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 (상계동)	
------	---------------	--	----	--------------	-------	-------------------------	--

※대지면적	0㎡	연면적	5,947.41㎡	※지역	※지구	※구역	
-------	----	-----	-----------	-----	-----	-----	--

건축면적	650.6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710.38㎡	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층수	지하: 3층, 지상: 7층
------	---------	-------------	-----------	-----	-----------	-----	--------	----	----------------

※건폐율	0%	※용적률	0%	높이	33.65m	지붕	(철근)콘크리트	부속건축물	
------	----	------	----	----	--------	----	----------	-------	--

※조경면적	㎡	※공개공지·공간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		
-------	---	------------	---	-----------	---	-----------	---	--	--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종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주	지하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659.58	제단법인순복음성민선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상계동)		2013.7.26.	등기명의인포시변경
주	지하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펍포실	113.75	111322-0*****				
주	지하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펍포실	62.06					
주	지하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종교시설(교회)	879.19		- 이하여백 -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2025년 07월 10일

노원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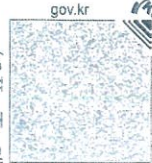
담당자: 부동산정보과
전 화: 02-2116-3613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97mm X 210mm(백상지(80g/㎡))

(2쪽 중 제1쪽)



gov.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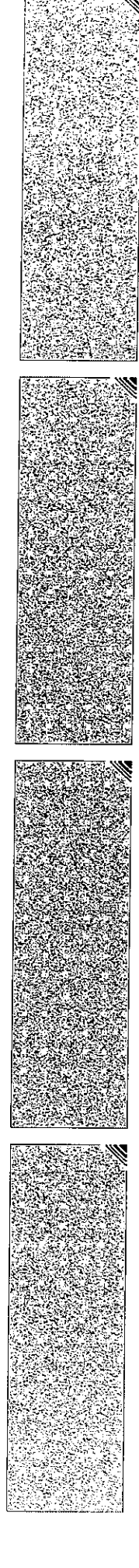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명칭	순복음노원교회 비전센터	호수/기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지번	지번 관련 주소	322-14, 321-146, 322-18, 322-24, 330-11, 330-17, 330-36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 (상계동)	도로명 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건축주	재단법인순복음성민선교회	111322-0*****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1대	비상용 대		허가일 2004. 11. 24.
설계자	강택구 예건,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사사무소-1454	지주식	대	대	대		※하수처리시설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착공일 2005. 3. 9.	
공사감리자	강택구 예건,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사사무소-1454	기계식	대	대	대	대	형식	지상	사용승인일 2007. 7. 11.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이관연 (주)범진종합건설	강남구-건축공사업-01-1677	전기차	대	대	대		용량	지하		
※건축물 인증 현황											
인증명	유호기간	성능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내진설계 적용 여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비적용						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미해당								
			기초형식: [] 지내력기초 [] 파일기초						종류 점검유효기간		
			구조설계해석법: [] 동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정기점검 2023. 11. 30. ~2026. 9. 17.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2007.7.18	2007.7.11. 지하3층에서 지상7층 5947.41㎡, 옥탑1층73.82㎡ 별도증축되어 신규작성.	2011.11.9	2011.11.08 표시변경[1층 공개공지 및 조경위치 면적변경 (276.98㎡ → 371.84㎡)].	- 이하여백 -
2009.6.11	2009.06.11. 1층 종교시설(교회) 473.18㎡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9.3㎡ 및 종교시설(교회) 463.88㎡로 용도변경.	2022.10.7	정기점검(점검기간: 2021.03.30 까지, 보고일: 2020.11.27)	
		2023.4.6	정기점검(점검기간: 2021.03.30 까지, 보고일: 2020.11.27)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 및 기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8. 1.>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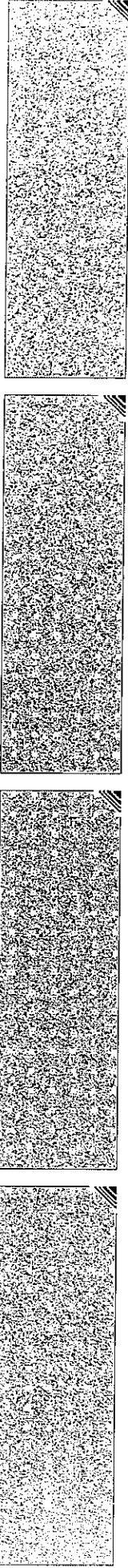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71120000095	고유번호	1135010500-1-03220014	명칭	순복음노원교회 비전센터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지번	322-14 외 7필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 (상계동)		

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지하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종교시설(교회)	522.45					
주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종교시설(교회)	463.88					
주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9.3					
주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54.88					
주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66.34					
주	4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460.63					
주	4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94.25					
주	5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54.88					
주	6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65.49					
주	7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	440.73					
주	옥탑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elevator계실	73.82					
		- 이하여백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www.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97mm X 210mm [백상지(80g/㎡)]



■ 건축국내청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외3서지] <개정 2023. 8. 1.>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1쪽 중 제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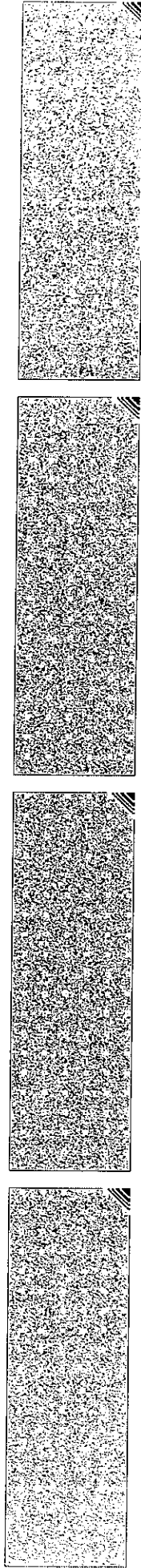
건물ID	2120071120000095	교유번호	1135010500-1-03220014	명칭	순복음노원교회 비전센터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지번	322-14 외 7필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0 (상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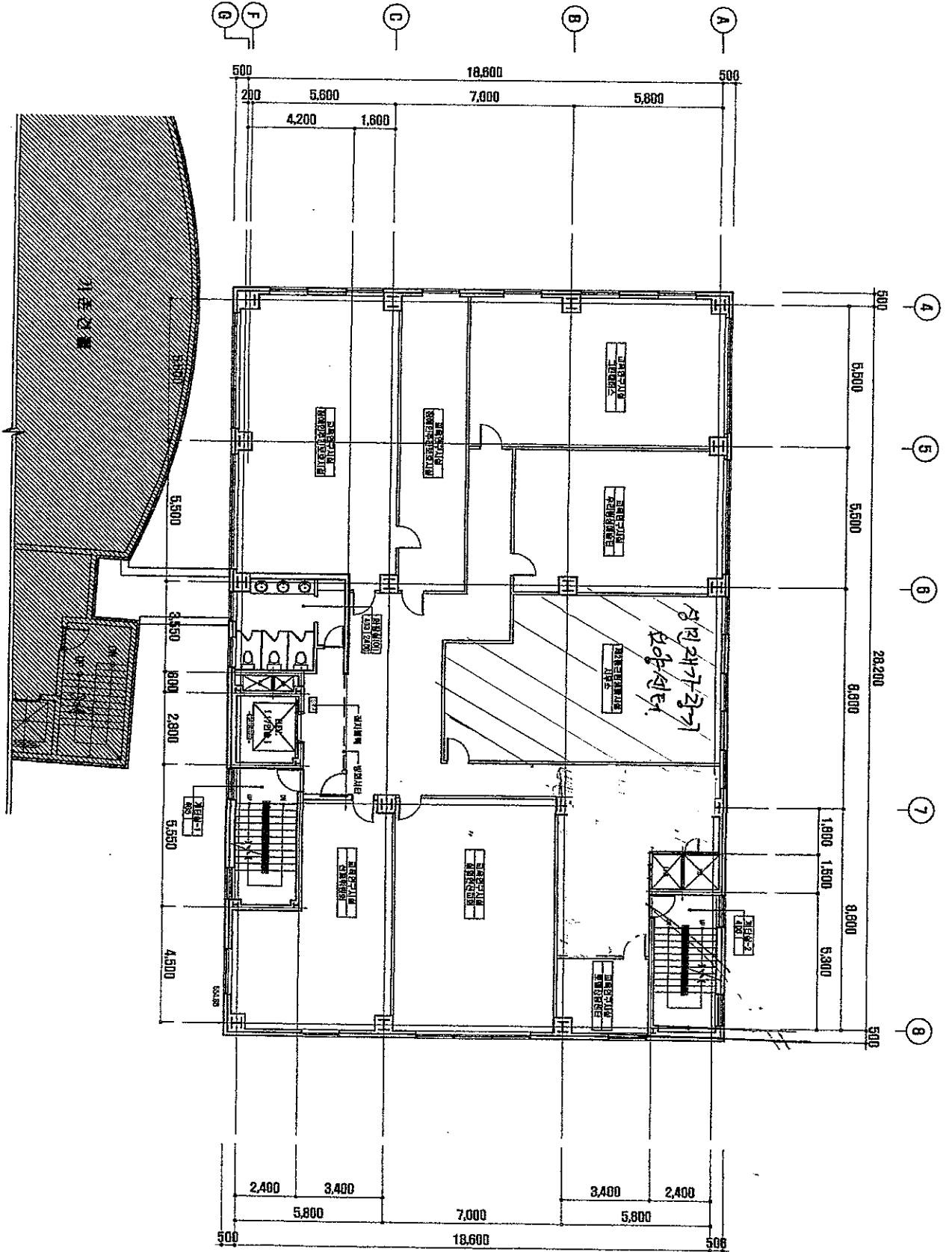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23.4.6	1.27)		
2023.4.6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1.03.30 까지, 보고일 : 2020.11.27)		
2023.5.9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1.03.30 까지, 보고일 : 2020.11.27)		
2023.12.29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3.11.30 까지, 보고일 : 2023.11.16)		
2024.2.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2023.8.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4.2.2)에 의거 건축물 관리 현황 여부 기재		
2025.7.8	2025.07.08.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 처리 통보[지상 4층: 교육연구시설 554.88㎡ → 교육연구시설 460.6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94.25㎡] - 이하여백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97mm X 210mm[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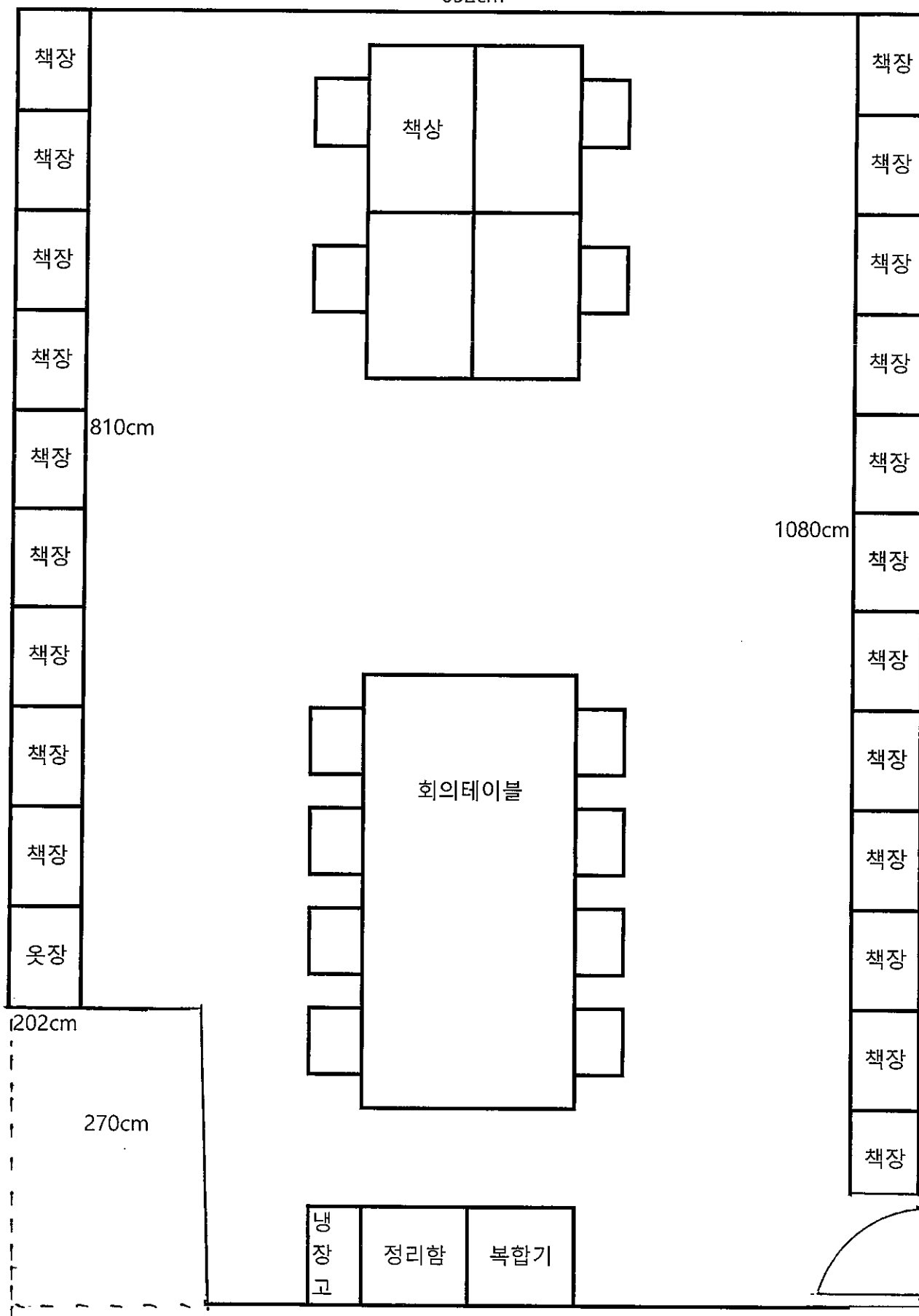


1 지상4층 평면도(변경후)

축 1/1750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사무실 평면도

652cm



건강진단서 (국가시험면허신청용-4)

병록번호 : A12104

연번호 : 3291

주민등록번호 : 420529-1030121

원부대조필

123123

인

환자성명	유재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1942-05-29	연령	만 83 세
환자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 101-3502				전화번호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질병명 및 검사항목은 건강진단서 발행요구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단, 위의 판단은 수진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검진 의사가 1차 면담한 결과와 아래에 표시된 검사 결과에 의한 것임

비 고	고령이고 복용약이 많아 마약류 소변검사 불가		
용 도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진단일	2025년 06월 16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흉부X-선 검사 ☐ TBPE 검사)
☐ 기타 (명시:)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자 2025년 06월 16일
의료기관명 이황가정의원
주 소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65번지부영프라자 306호
전화(팩스) 031-568-9408(031-568-9407)

면허번호 제 33248 호 의사성명 이기선

이기선 인